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2호 2020. 12. 1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18호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19호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720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721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722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723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92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한재골, 객방) 시행계획 고시 ----- 32
- 사천시 고시 제3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사항고시 ----- 34
- 사천시 고시 제39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 고시 ----- 35
- 사천시 고시 제400호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 36
- 사천시 고시 제403호 사천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업무 위탁 ----- 38
- 사천시 고시 제404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고시 ----- 39
- 사천시 고시 제405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4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484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50
- 사천시 공고 제150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5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499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재향경우회” (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1. 지역사회 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내의 강당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2. “사용자”란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치) 교육관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에 둔다.

제5조(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 교육 및 전시
2. 어민들을 위한 단체 교육, 행사 지원
3. 그 밖에 어촌문화 발전 등을 위한 사업

제6조(사용방법 및 사용료)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관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어촌·어민 관련 행사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2.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어민단체가 주최하는 어촌·어민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교육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예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10조(위탁료 산정) 시장은 위탁료 산정 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등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②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이 교육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 행위
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17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표 1] <개정 2020.12.10.>

교육관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시설 사용료 (1회 1시간 기준)	난방비 (1시간 기준)	냉방비 (1시간 기준)	비고
사천시 어촌체험 교육관	평일 주간	10,000	2,000	2,000	•사용시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	12,000	2,000	2,000	•사용시간 -토요일: 09:00~18:00 -야간: 18:00~23:00
	1일	70,000	-	-	•사용시간: 09:00~23:00

※ 시설 사용료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난방비 및 냉방비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표 2] <개정 2020.12.10.>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에 사용 전 취소	사용료의 80% 반환	
	사용기간 중 취소	남은 사용일수 및 사용시간 사용료의 60% 반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

신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청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위 탁 기 간

위 탁 시 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어촌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위탁자”이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위탁자”는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0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11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천시

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수탁자” ○○○○○

대표 ○○○ (인)

경상남도 ○○시 ○○읍·면·동 ○○번지

※ 개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5호 본문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6. “수수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49-28”을 “49-30”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휴관일)”을 “(운영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수탁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탁기관에서”로, “수강료”를 “징수된 수강료”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표 3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 을 “14일” 로, “1회” 를 “대출권수는 1회” 로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

제21조제2항 중 “100분의 3” 을 “100분의 7”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표 1] <개정 2020.12.10.>

수강료 등(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움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A4	3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4. 프로그램 수강료

<u>구 분</u>	<u>금 액(원)</u>	<u>비 고</u>
개별 영어강좌 (강습, 교육)	월 10,000원	◦주1회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표 2】 <개정 2020.12.10.>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 청	1) 사용 또는 개강 전일	<u>전 액 반 환</u>	
	2)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	
	3)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	
	4)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	
	5)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부 요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 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 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u>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u>	
구비 서류	<u>1) 신분증</u>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표 3】 <개정 2020.12.10.>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앞 면)

도서회원증

이 름 :

회원번호 :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통합도서관

(뒷 면)

도서관 이용안내

- 도서관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기간: 14일 이내
- 대출권수: 1회 5권 이내
- 본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 전화번호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0.>

(앞면)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학교명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			집전화번호	
직장명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천시 도서관 회원통합에 따라 사천시어린이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사천시 통합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천시통합도서관
1. 사천시어린이도서관
 2.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 뒷면의 사천시어린이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사천시어린이도서관(사천시 통합도서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 ·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도서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 회원증 발급 및 도서관 시설, 자료 이용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반납예정일 안내, 연체도서 독촉,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정보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나. 선택항목 : 학교·직장명, 근무지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통합회원 여부, 회원구분, 가입도서관,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 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0.>

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반환 신청액	금	원(금)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u>사천시</u>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 을 “사람을” 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역주민들” 을 “지역주민”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들” 을 “지역주민”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 1명과 5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11조의 제목 “(회원제)” 를 “(회원가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가입 신청서” 를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로, “하고, 회원에게는” 을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로, “회원증” 을 “도서회원증”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람에게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회” 를 “대출권수는 1회” 로 한다.

제15조 중 “모든 작은도서관” 을 “작은도서관” 으로, “위해서” 를 “위하여” 로, “설치하여야 한다” 를 “둘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17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를 “사천시”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을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사천시 고시 제2020-392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한재골,객방)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할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재해위험저수지(한재골,객방) 정비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256번지, 정동면 소곡리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저수지 보강·보수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코자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한재골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제당정비 L=56m, B=3.0m, 여수토방수로 정비
 - 그라우팅 50공
- 객방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제당정비 L=112m, B=3.0m, 여수토방수로 확장(5~6m→7~16m)
 - 그라우팅 134공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정동면 소곡리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5. 사 업 비

○ 객 방 : 568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한재골 : 1,54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6.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2.(24개월)

7. 사업의 효과 :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8)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2020-3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사항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실시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10.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허가일자) : 제2020-10호 (2020.07.22.)
2.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PE 접안시설 및 도교 설치 1식
4. 점용·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81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사항
 - 기존 :
 - * 승인번호 : 제2020-9호 (2020.11.18.)
 - * 공사기간 : 2020.09. ~ 2020.11.
 - * 공사내용 : PE 접안시설 및 도교 설치 1식
 - 변경 :
 - * 승인번호 : 제2020-11호 (2020.12.01.)
 - * 공사기간 : 2020.09. ~ 2021.11.
 - * 공사내용 : PE 접안시설 및 도교 설치 1식
6.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일자 : 2020.12.01.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 2020-39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10.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9호 (2020. 7. 16.)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구랑항 선착장 연장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9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12.07.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2020 -400호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2. 사업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 일원
3. 계획의 범위 : 280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낙후된 어촌, 어항을 통합하여 활성화시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어촌, 어항재생사업’임.
 - 생업공간인 어항과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3년간)
- 총사업비 : 8,574백만원(국비 6,003, 도비 771, 시비1,800)
- 사업계획의 개요
 - 어항시설정비 : 물양장 설치, 부잔교 설치, 준설
 - 어민복지시설 : 어구보관창고, 어민회관
 - 비토피아센터 : 비토피아센터(폐교개축, 신축), 비토피아마당, 돛뎀션
 - 환경개선사업 : 등대 및 담장조형물, 안내판설치

6. 관련자료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낙지포항)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서포면	비토리	14-13	잡	6,504.8	1,000	경상남도	어구보관창고 어민회관
2	서포면	비토리	30-1	학	2,093	2,093	사천시	비토피아센터 (폐교개축,신축) 비토피아마당
3	서포면	비토리	259-13	학	278	278	사천시	
4	서포면	비토리	30-6	학	1,084	1,084	사천시	
5	서포면	비토리	45-12	제	987	987	해양수산부	등대
6	서포면	비토리	14-14	제	294	294	경상남도	등대 및 담장조형물
7	서포면	비토리	14-9	제	1,049	1,049	해양수산부	담장조형물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2020-403호

사천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업무 위탁

사천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업무 위탁 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제2조(관리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1. 위탁업무: 사천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업무
2. 대상시설: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중포일반산업단지,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3. 수탁기관: 사단법인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4. 업무내용
 -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나. 역세척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5. 위탁기간: 2021.1.1.부터 2025.12.31.까지, 이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6. 문의처: 사천시 환경보호과(☎ 055-831-2770)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 2020-4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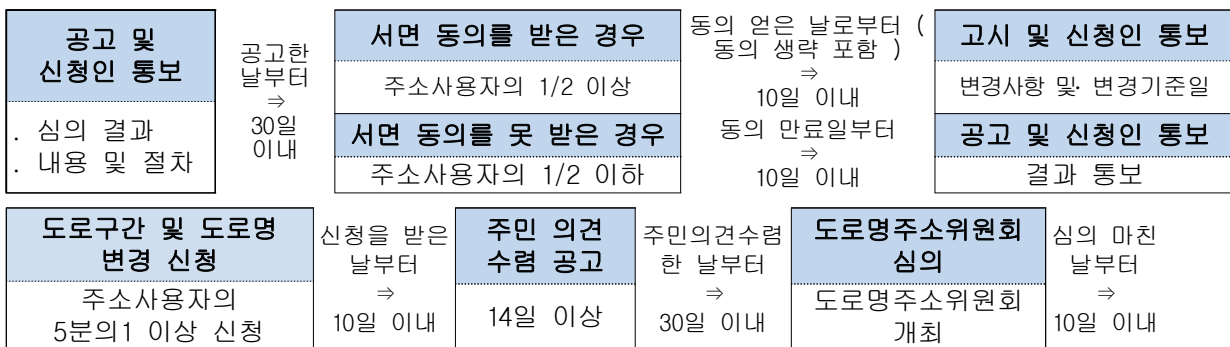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8.

사 천 시 장

1. 고 시 일 : 2020. 12. 8.
2. 고시방법 : 공보,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영 보

제 702 호

도로명 신규 부여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폭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유사 및 동일 도로명	부여사유
			기점	종점	중심선	증심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1	용현면	청골1길	용현면 신진리 234-2	용현면 신진리 343	도면 참조	도면 참조	713	3 길	20	1/72	해당 없음	청골길에서 일련번호 부여
2	정동면	객방1길	정동면 소곡리 1012	정동면 감곡리 43-1	도면 참조	도면 참조	1468	4 길	20	1/148	해당 없음	객방길에서 일련번호 부여
3	군양면	묵실1길	군양면 묵곡리 1156	군양면 묵곡리 1145-6	도면 참조	도면 참조	537	3 길	20	1/54	해당 없음	묵실길에서 일련번호 부여
4	군명면	옹구정길	군명면 조장리 510-1	군명면 용산리 355	도면 참조	도면 참조	1113	3 길	20	1/112	해당 없음	옹구정길이 있었다하 여 그 이름을 따서 일 련번호 부여
5	사천읍 정동면	사천강 자전거1길	사천읍 사주리 465-1	정동면 예수리 830	도면 참조	도면 참조	1021	3 길	20	1/104	해당 없음	사천강 일대에 위치하 여 그 이름을 따서 일 련번호 부여
6	사천읍 정동면	사천강 자전거2길	정동면 예수리 7	사천읍 사주리 465-43	도면 참조	도면 참조	1914	3 길	20	1/192	해당 없음	사천강 일대에 위치하 여 그 이름을 따서 일 련번호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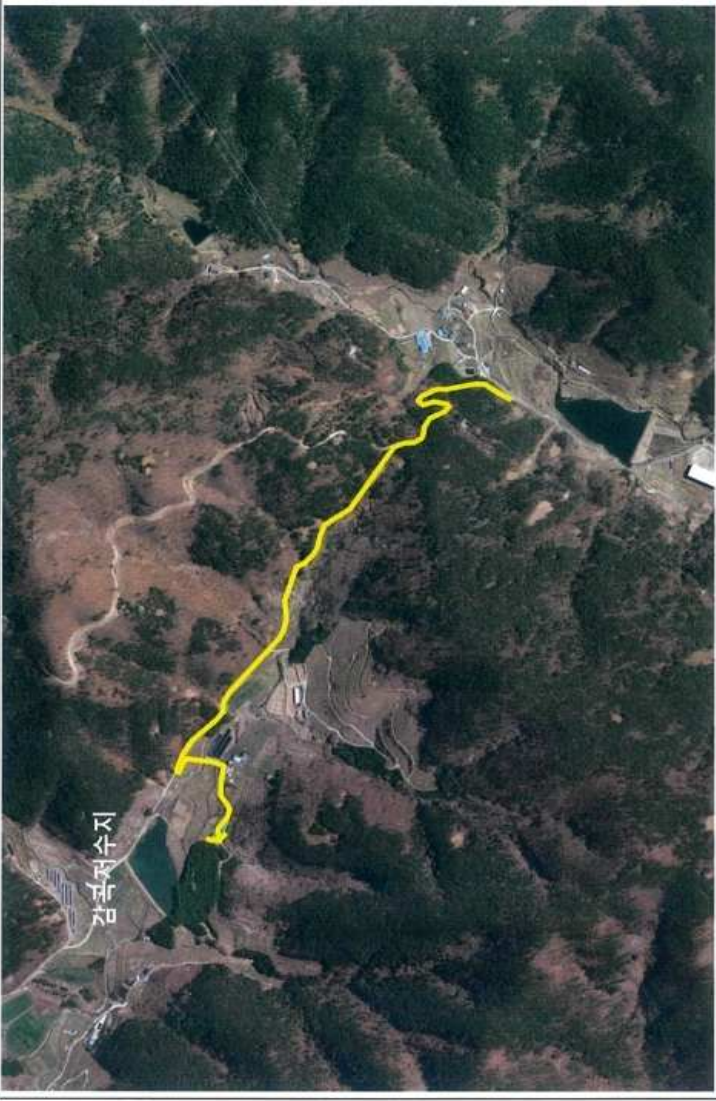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p>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p>	
<p>도면(중심선)</p>	
<p>일련번호, 도로명</p>	<p>1. 청골1길</p>


사 천 시 권 보

제 702 호

<h2>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h2>	
<p>일련번호, 도로명</p>	<p>도면(중심선)</p>
<p>2. 객방1길</p>	


사 천 시 권 보

제 702 호

<h2>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h2>	
<p>도면(중심선)</p>	
<p>일련번호, 도로명</p>	
<p>3. 목심1길</p>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h2>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h2>	
<p>도면(중심선)</p>	
<p>일련번호, 도로명</p>	<p>4. 옹구정길</p>

사 천 시 권 보

제 702 호

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	
도면(중심선)	
일련번호, 도로명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고시 제2020-405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260(2019.11.21.)호로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수립 고시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3,286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1,604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80㎡,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215㎡	1,604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지역경관개선			861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 A=1,697㎡, 화장실 등	422	
	예수마을 쉼터 조성	휴게시설 1식	182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245	
	권역 안내판	1식	12	
지역역량강화			280	
	교육 및 견학	1식	130	
	맞춤형 컨설팅	1식	41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1식	90	
	운영지원	1식	19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41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5년 1월 ~ 2020년 12월 31일

■ 변 경 : 2015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7,446							
1)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최*경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_**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					〃
3	〃	〃	668-12	답	121	121	〃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1,699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_*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쉼터 조성					880							
1	정동	예수	446-2	답	830	90	기타 법인 단체					
2	〃	〃	447-2	답	31	31	사천시					
3	〃	〃	667-16	답	770	616	사천시					
4	〃	〃	797-3	도	405	143	농림축산 식품부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2,428							
1	정동	예수	754	구	7,058	1,750	농림축산식품부					예수마을 둘레길
2	〃	〃	180-3	답	1,573	32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
3	〃	〃	180-4	답	142	142	영화*** ***	진주시 상봉동 ***				〃
4	〃	〃	181-6	대	443	57	이*수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동***호	정동농업협동조합			〃
5	〃	〃	181-8	답	152	152	〃	〃	〃			〃

나. 물건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동면 대곡리	656-2	업무 및 창고시설	조립식	320㎡	수청 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공고 제 2020-1484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명 부여, 변경 내용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4.

사 천 시 장

1. 공 고 일 : 2020. 12. 4.
2. 공고방법 : 공보,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의안번호	심의 안건	심의결과	비고
제 1 호	청골1길, 객방1길, 묵실1길, 옹구정길 도로명부여	원안가결	
제 2 호	사천강자전거1길, 사천강자전거2길 도로명부여	원안가결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내용 :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공고 제2020-150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12. 10.

사 천 시 장

1. 목 적: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의 유실,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20. 12. 10. ~ 12. 30.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2020. 12. 10. ~ 12. 30. (20일간)
4. 공고방법: 일간신문, 사천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www.sacheon.go.kr)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31-6036)

라. 제출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52539

마.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33-831-3316)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역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청널공원	경남 사천시 서동 353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5,512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신규
곤양고등학교 주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1194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2,196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신규

8. 지정 후 정비계획

지역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청널공원	2021년 이후	700	-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L=245m, H=10~30m [낙석방지망, 소일네일링, 수목제거 등]	
곤양고등학교 주변	2021년 이후	500	-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L=200m, H=10~20m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수목제거 등]	

※ 사업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첩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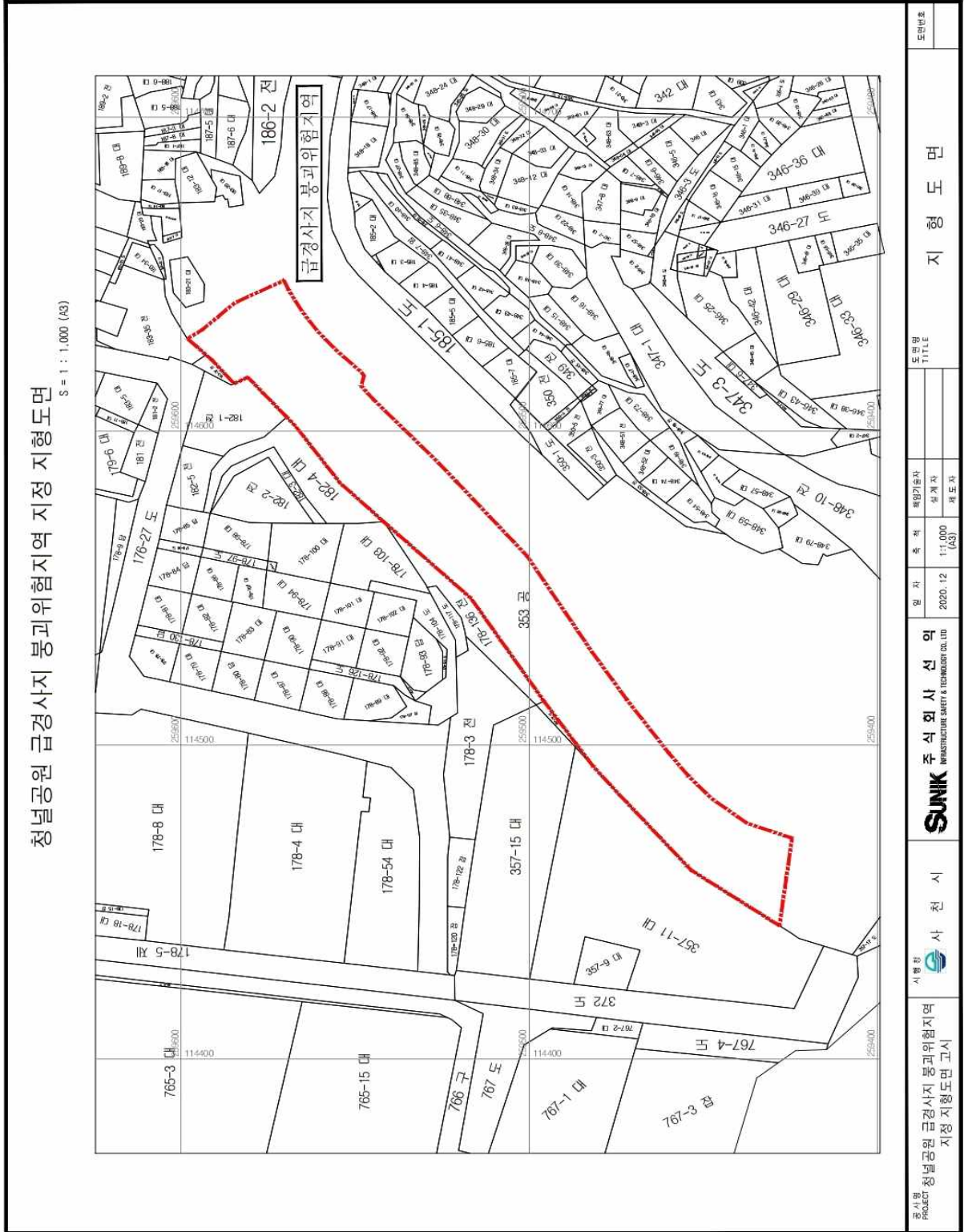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사천시공보

제 702 호



사천시공보

제7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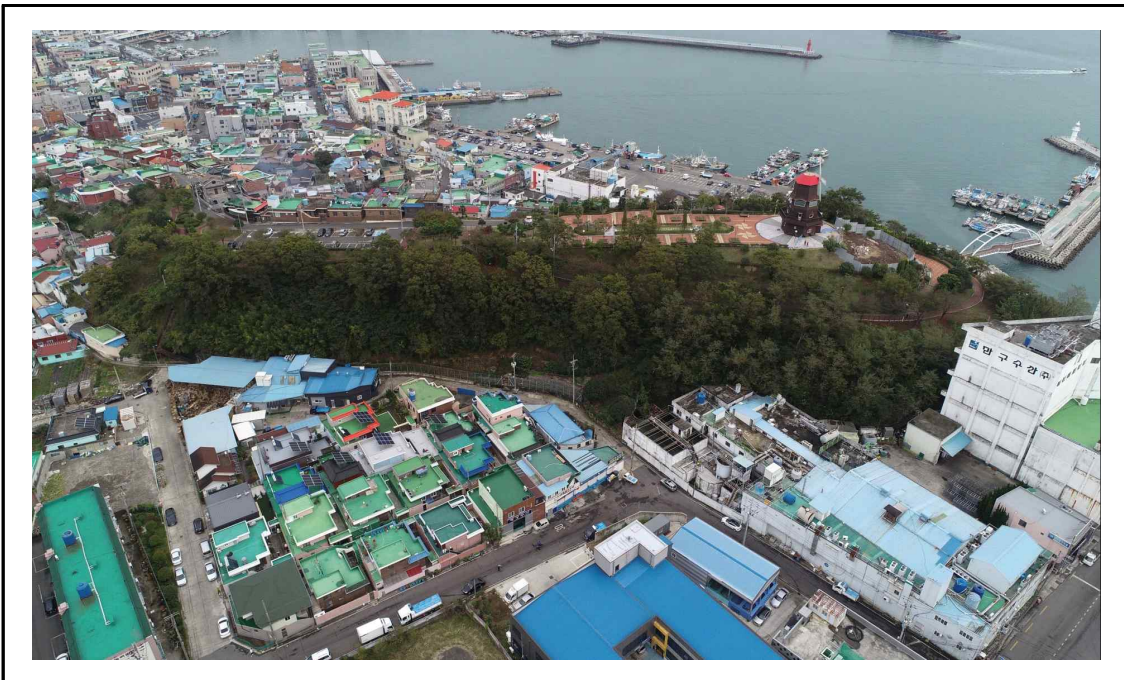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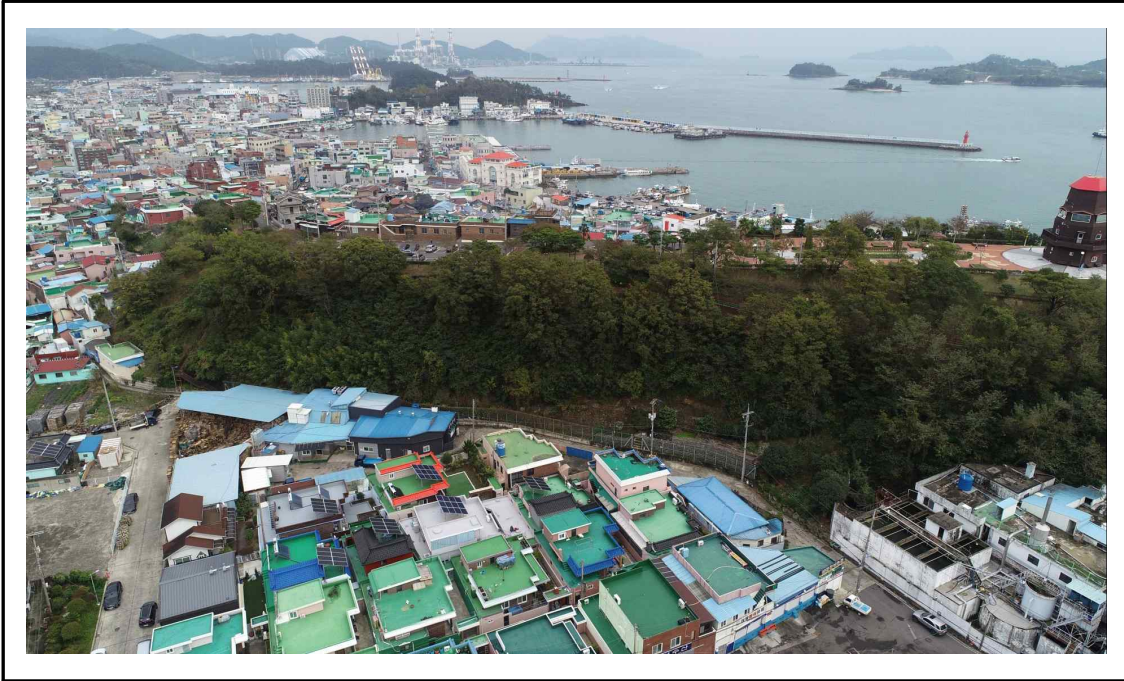
위치도(청닐공원)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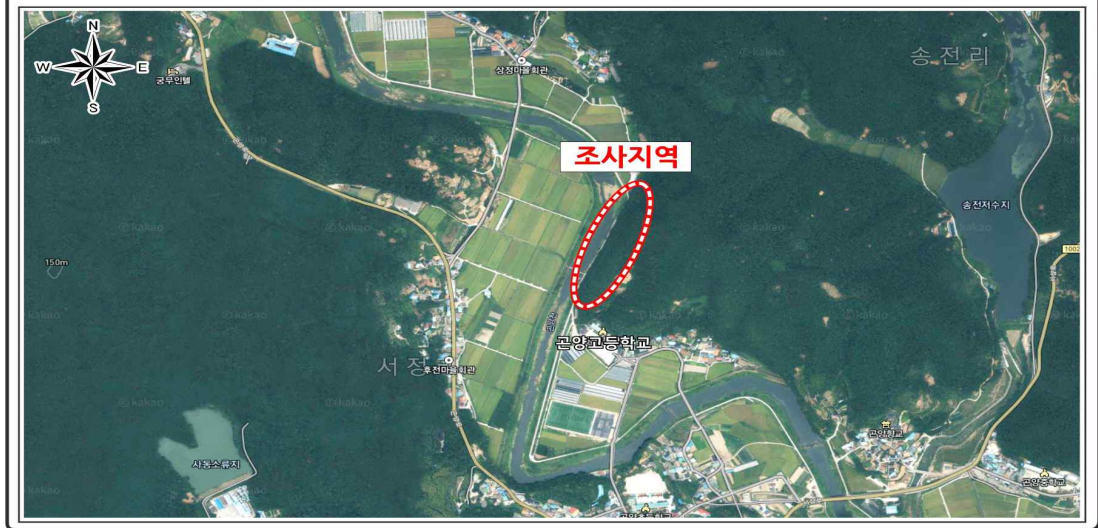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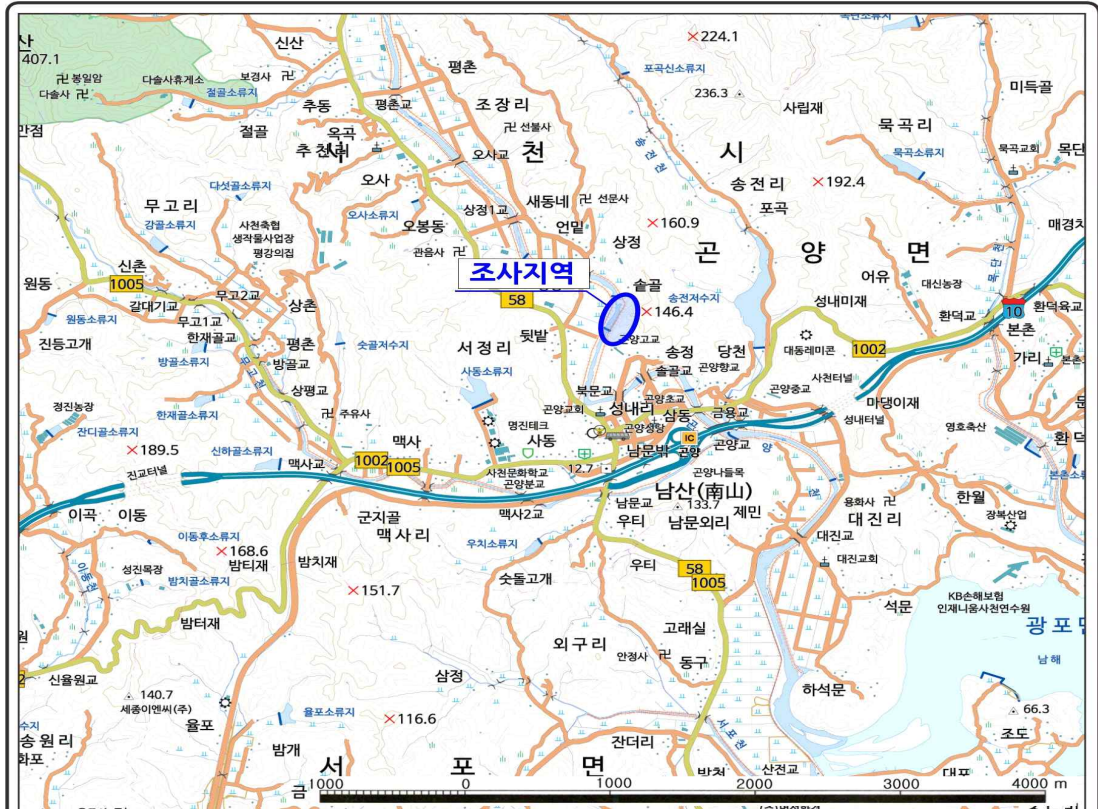
현장사진(청닐공원)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위치도(곤양고등학교 주변)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현장사진(곤양고등학교 주변)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공고 제2020-1499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되거나 설치예정인 시설물 중 이용료 기준에 미 반영된 시설물(방문자센터, 글램핑)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료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 이용료 추가 반영(안 제18조 별표1)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702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45, FAX : 831-6042)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사천시 조례 제2020- 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일로부터” 를 “신청일부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약일로부터” 를 “협약일부터”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별지 제3호서식” ”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사천시” 를 “사천시
(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취소일로부터” 를 “취소일부터” 로
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사천시” 를 각각 “시”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9. (생 략)</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u>시장은</u>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u>사천시</u> <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탁운영 절차)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u>신청일로부터</u>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9조(위탁운영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신청일부터</u>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위탁기간은 <u>협약일로부터</u>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p>제10조(위탁기간) ① ----- ----- <u>협약일부</u> <u>터</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탁사용료 징수 등)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 해당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한다.</p> <p>1.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14조(보험가입) ① (생 략)</p> <p>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천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화재보험 등(이하 “시 보험”이라 한다)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 보험에 미리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지서 교부 시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탁사용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별지 제3호서식-----.</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 ----- ----- ----- . 다만-----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 ----- ----- .</p>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이용료의 반환) ① <u>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③ <u>반환은 이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u></p> <p>제20조(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u>사천시</u>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p> <p>2. <u>사천시</u>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p> <p>3. (생략)</p> <p>제24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19조(이용료의 반환)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취소일부터 ----- ----- ----- -----.</p> <p>제20조(이용료 등의 면제) ----- ----- -----.</p> <p>1. <u>시</u>----- 2. <u>시</u>----- -----</p> <p>3. (현행과 같음)</p> <p><삭제></p>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현 행>

[별표 1]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1. 유어장

○ 바다낚시터

(단위:원)

구 분		연 중	비 고
당일이용	성 인	20,000	
	청 소 년	10,000	

※ 청소년 : 8세 이상 ~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 무료

○ 펜션형 바다낚시터

(단위:원)

위 치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대방 ·	개인	성 인	20,000	20,000	
		청소년	10,000	10,000	
실안 (산분령)	전세	1일/1실 (4인기준/ 최대10인)	220,000	250,000	4명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① 비수기, 성수기 구분

- 비수기 : 1~6월, 9~12월
- 성수기 : 7~8월

②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 3시간 : 20,000원
- 3시간 초과 : 1일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2. 체육시설

○ 풋살경기장

(단위:원)

구 분	이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1일	2시간	20,000	25,000	야간 조명 사용시 1만원 추가적용

○ 요금할인

가. 사천시민 20%

※ 사천시민 : 사천시 주민등록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

나. 청소년 30%

※ 사천시 소재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이하 사천시 거주 청소년

※ 사천시 외 거주 청소년은 사천시민 할인을 적용

3. 숙박시설

(단위:원)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저도 펜션시설	1박2일, 4인 기준	70,000	100,000	100,000	130,000	A=38.88㎡
일반캠핑	1면/ 14:00 ~ 익일11:00	20,000	25,000	30,000 (7월 ~ 8월)		전기이용료 포함
주차장	경형 (1,000cc 미만)	1,000				
	소형 (1,600cc 미만)	2,000				
	중형이상 (1,600cc 이상)	3,000				
	승합자동차	5,000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① 평일과 주말, 성수기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7월 ~ 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② 이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③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시설구분	1시간 초과 ~ 2시간	2시간 초과 ~ 4시간	4시간 초과
펜 선	20,000	40,000	1일 이용료
캠 핑 장	10,000	20,000	1일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개정안>

【별표 1】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1. 유어장

○ 바다낚시터

(단위:원)

구 분		연 중	비 고
당일이용	성 인	20,000	
	청 소 년	10,000	

※ 청소년 : 8세 이상 ~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 무료

○ 펜션형 바다낚시터

(단위:원)

위 치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대방	개인	성 인	20,000	20,000	
		청소년	10,000	10,000	
실안 (산분령)	전세	1일/1실 (4인기준/ 최대10인)	220,000	250,000	4명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① 비수기, 성수기 구분

- 비수기 : 1~6월, 9~12월
- 성수기 : 7~8월

②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 3시간 : 20,000원
- 3시간 초과 : 1일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2. 체육시설

○ 풋살경기장

(단위:원)

구 분	이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1일	2시간	20,000	25,000	야간 조명 사용시 1만원 추가적용

○ 요금할인

가. 사천시민 20%

※ 사천시민 : 사천시 주민등록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

나. 청소년 30%

※ 사천시 소재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이하 사천시 거주 청소년

※ 사천시 외 거주 청소년은 사천시민 할인을 적용

3. 숙박시설

(단위:원)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저도 펜션시설	1박2일, 4인 기준	70,000	100,000	100,000	130,000	A=38.88㎡
일반캠핑	1면/ 14:00 ~ 익일11:00	20,000	25,000	30,000 (7월 ~ 8월)		전기이용료 포함
<u>방문자 센터</u>	<u>1박2일, 4인 기준</u>	<u>100,000</u>		<u>100,000</u>		<u>전기이용료 포함</u>
<u>글램핑</u>	<u>1동/1박2일</u>	<u>80,000</u>	<u>110,000</u>	<u>150,000</u> (7월 ~ 8월)		<u>전기이용료 포함</u>
주차장	경형 (1,000cc미만)	1,000				
	소형 (1,600cc미만)	2,000				
	중형이상 (1,600cc이상)	3,000				
	승합자동차	5,000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① 평일과 주말, 성수기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7월 ~ 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② 이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③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시설구분	1시간 초과 ~ 2시간	2시간 초과 ~ 4시간	4시간 초과
펜 션	20,000	40,000	1일 이용료
캠 핑 장	10,000	20,000	1일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702호

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아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50,000	
단체글램핑	12m×9m (16인용)	1동/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1일	25,000	30,000	35,000	전기이용 불 가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